

損害査定評價報告書

Insurance Claim Adjustment Evaluation Reports

김 해 밀

관리번호	RE1405_김해밀
작성일자	2014년 5월 18일



우) 130-860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158-1. 2층	Tel : 02) 458-8216 Fax : 02) 457-4971	www.bosang119.com
--------------------------------------	--	-------------------

Report No. 생략 Date 2014. 05. 18.

수 신 : 김해밀 귀하
참 조 :
제 목 : 손해사정평가보고서

1. 귀댁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보험업법 제187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었고, 동법 제188조에 의해 손해사정 평가를 의뢰받아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손해사정평가보고서를 제출 하오니 보상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즉, **본 보고서는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평가한 것으로 보험회사등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는 없습니다.**

- 아 래 -

■ 손해사정 기초자료

피해자의 진술내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11년도 상반기) 외 를 사정자료로 삼음.

- 1) 소득 : 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였음.
- 2) 휴업기간 : 피보험자의 나이, 상해 및 치료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5월 1일까지를 휴업기간 (82일)으로 산정함.
- 2) 노동능력상실율 - 피해자의 진술내용으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판단은 불가함을 전제로하며 단, 경험칙상 진단내용과 통증호소부위를 감안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장애인단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1. 손해보상액 산출내역서 1부

피엔에스해밀손해사정(주)



보험금산출내역					
성 명	김해밀 (남)		직 업	택시기사	
생년월일	1959.05.20 (만 51세)		적용소득	월1,569,688원	
1. 사 망 (2. 장 해)			피해자과실	0%	정 년 60세
수익상실기간	90월		치 료 기 간	입원	• 2011.02.09 ~ 2009.05.01 (82일)
L 계 수	78.9894				
노동능력상실률	• 요추부 : 척추손상 V-D-2-b 24% (사고관여도50% 한시3년) • 고관절 부전강직 II-A-1 12% (영구) • 합장해율 : 12% + (100% - 12%) × 12% = 22.6%				
산 출 내 역			취 업 가 능 월 수 계 산		
① 위자료	금2,000,000원		1. 정년(60세) 1959. 05. 20. ≡ 생년월일 + 60. ≡ 정년규정 2019. 05. 20. ≡ 가동종료일 - 2011. 05. 01. ≡ 치료종결예정일 8. 00. 19. ≡ 96월 → L계수(90월) : 78.9894 (소득상실기간은 소송기준에 따른 임의 평가임.)		
② 휴업손해액	금3,432,384원				
§ 계산 : 1,569,688원/30 × 82일 × 80% = 3,432,384원			기타사항		
③ 일실수익액	금20,430,260원				
§ 계산 : 1,569,688원 × 33.3657 × 22.6% = 11,836,464원			1. 사고일시 2011. 2. 09. 2. 2010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일용임금 • 2010년 상반기 : 1,569,688원 3.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2011년 5월 1일(조기합의시)까지 82일을 휴업기간으로 정함. 4. 향후치료비용(추정비용의 근거 및 내용) § 대퇴골 핀제거비용 : 150 ~200만원 § 수술부위 성형추정비용 : 180~250만원 § 재활치료비용(조기합의시 약3개월간 필요) : 120 ~ 150만원 § 합계액 : 450만원 ~ 570만원 5. 후유장애진단에 대한 추정 § 고관절부의 치료후 발생한 관절운동의 제한에 대하여 적용하면 "고관절 부전강직 II-A-1 12% 영구" § 요추부의 신경증상을 고려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나올 경우 "척추손상 V-D-2-b 24% 사고기여도50% 한시3년" § 중복장애의 계산 : 12% + (100% - 12%) × 12% = 22.6% → 장애감정일(추정)로부터 3년간 22.6%, 이후 영구적으로 12%의 장애가 잔존할 것으로 평가됨.		
§ 계산 : 1,569,688원 × (78.9894-33.3657) × 12% = 8,593,796원					
④ 향후치료비	금5,000,000원				
⑤ 합계액(①~④)					
§ 계산 : 금2,000,000원+금3,432,384원+금20,430,260원+금5,000,000원 = 금30,862,644원					
결 과			금30,862,644원		
			책임 손해사정사 박 성 정 (인) (등록번호 제3-326호)		

	[별첨] 사정목록	
--	------------------	--

【 입 증 자 료 】

1. 손해보상금 산출을 위한 입력양식 2매

Sample Document